

2022년 제1회 합천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 재공고

2022년 제1회 합천군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2년 08월 30일

합천군의회인사위원장

I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 분야	임용직급	선 발 인 원	임 기	근 무 처	담당업무
정 책 지 원 관	지방행정8급 (일반임기제)	2명	2년 (주 40시간)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조례 제·개정, 예·결산심의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의 작성에 관한 자료 수집·분석·검토 등 - 지방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의 개최를 위한 자료작성 및 취합 - 지방자치법 제47조 ~ 제52조 및 제83조 관련 업무추진 지원 등

※ 근무성적이 탁월할 경우 횡수에 관계없이 총 5년의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가능

II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6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III

응시자격

○ 공통요건(기준일 : 최종시험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 임용에 제한이 없는 자
- 성별제한 없음

(단,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또는 최종합격자 발표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삭제 <2022. 1. 4.>
 - 바. 삭제 <2022. 1. 4.>
 -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응시연령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만 18세 이상	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거주지 제한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2022년 1월 1일 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 2022년 1월 1일 전까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적용예시
행정구역의 통폐합 이전 경상남도 행정구역이었던 경상남도 양산군 기장읍·장안읍·철마면·일광면·정관면 일원은 1995. 03. 01.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 편입되어, 현재 행정구역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 를 기준으로 하며, 재외국민 (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함

○ 1차 공고(2022. 08. 08.) 응시자는 **기 제출한 응시원서로 같음**하고 **별도 응시원서를 제출하지 않음**

○ **자격요건**

구 분	자격요건
정 책 지원관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국회, 지방의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대학원, 연구소, 법인, 민간기관 등에서 예·결산, 회계, 행정, 감사, 조사 관련 근무경력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임용 후 수행예정인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

※ **전일근무가(1일 8시간) 아닌 경우** 임용 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 전일근무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고,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예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경력 => 2년으로 경력인정』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단,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IV 보수 및 복무

○ 보수

-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에 따른 임용등급별 **연봉하한액 지급이 원칙임**
- 연 봉 액

(단위:천 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8급	55,877	39,859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시 가입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복 무

- 근무기간 : 2년
- 평 가 : 『지방공무원법』 제76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정기·수시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 성과연봉 계약 등에 반영함
- 근무조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을 준용

V 채용방법

○ 채용방법

- 준용절차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절차준용
- 채용절차

서류전형 (제1차 시험)	면접시험 (제2차 시험)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의 적합 여부를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함 • 평정요소 별 점수를 부여하여 상·중·하로 평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 5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 로 평정한 경우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 로 평정한 경우

VI 채용공고 및 시험일정

구 분	기 간	주요내용	비 고
채 용 재 공 고	08.30.(화)~09.12.(월) (13일간)	• 임용근거, 직급 및 인원, 임용요건 등 채용공고 실시	
원 서 접 수	09.13.(화) ~ 09.16.(금) (4일간)	• 응시원서접수 실시(방문, 등기우편 등)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시 재공고 실시(10일 이상)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09. 19.(월)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지	제1차
면 접 시 험 실 시	09. 26.(월)(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제2차
최 종 합격자 발표	09. 28.(수)(예정)	• 최종 합격자 개별통지 및 합천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 공지사항 게시	

- ※ 시험일자, 면접장소, 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응시자에게 개별통지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실시,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공고
- ※ 서류전형합격자, 면접시험 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합천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 공지사항 게시(<https://www.hccl.go.kr/source/korean/news/notice.jsp>)

VII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09. 13.(화) ~ 09. 16.(금), (4일간)
- ※ 접수시간 :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055-930-3612)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합천군의회 의정담당】
-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안내

- ▷ 우편접수는 2022. 09. 16.(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반드시 접수여부를 유선(☎055-930-3612)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소 : (우)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1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일반임기제 채용담당자
- ▷ 응시수수료 :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5천원) ※ **정부수입인지 제출불가**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E-MAIL로 통보할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함
- ▷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고내용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 서류 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을 금하며, 아래의 순서대로 제출
-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이 가능할 시 사본제출이 가능함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5,000원

(합천군 수입인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수입증지 판매장소 : 합천군청 1층 민원지적과 1번 창구]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증명서를 첨부**함

③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 학력, 자격증, 경력 등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것만 기재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 서식】

- ⑤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 ⑥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자체서식 가능】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 및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발행기관 직인(또는 법인인감)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성명,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민간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것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경력요건의 경우 인정되는 관련 분야의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⑧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 ⑨ 개인정보 등 처리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https://www.ei.go.k>)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경력검토를 위하여 ‘보험가입 전체기간’ 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별도 소명자료 첨부요함
- ⑪ 주민등록초본(전체이력,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⑫ 해당분야 자격증 1부(사본제출 가능)
- ⑬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 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⑯ 기 타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VIII

응시자 유의사항

- ①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②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하여 신청할 경우 반환할 수 있습니다.
- ③ 합천군의회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④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⑥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록한 자는 합격 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⑦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⑧ 1회 이상 재공고에도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에 따른 제2차 시험을 실시하며, 응시자 중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거나 불합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⑨ 최종합격 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시험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⑩ 본 공고내용은 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합천군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 ⑪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으로 문의(☎ 055-930-361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기술서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직렬)	선발예정인원
정책지원관	지방행정8급 (일반임기제)	2명

임용예정기관명	임용기간
합천군의회 의회사무과	임용일로부터 2년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개정,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등 주요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의 작성에 관한 자료수집 · 검토 · 분석 ○ 지방의원이 개최하는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의 개최를 위한 자료작성 및 취합 ○ 지방자치법 제47조 ~ 제52조 및 제83조 관련 업무추진 등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 능력·조정능력, 분석적 사고력, 상담능력 및 협동정신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및 결산 자료에 대한 지식 ○ 주요사업,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재정 분석 및 평가 능력 ○ 예산 및 재정 동향 관련 지식 ○ 지방의회 관련 지식

임용분야 : 정책지원관	
응시자격	<p>다음의 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임용예정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대학원, 연구소, 법인, 민간기관, 민간업체에서 예산, 결산, 회계 분야 업무경력</p>